

클라우드 보안서비스 도입기준 변경 공지

<'21. 06. 08.>

□ 개요

- (주요 변경 내용) KISA 클라우드 보안인증을 획득한 클라우드 보안서비스 (SECaaS)는 CC인증 또는 보안기능 확인서가 없어도 각급기관에서 도입가능
※ KISA 클라우드 보안인증서의 유효기간 확인 필수

구분	주요내용	
대상	- 웹방화벽 서비스, 스팸메일차단서비스 등 사전인증(CC인증 또는 보안기능확인서)이 필요한 정보보호제품을 포함하고 있는 클라우드 보안서비스	
시행기간	- 2021.6.14. ~ 2024. 12. 31	
주요내용	기존	변경내용
	- 사전인증 제품에 대해서 사전 인증이 있어야만 신청가능	- 사전인증 제품에 대해서 사전 인증이 없어도 신청가능

※ KISA 클라우드 보안인증 획득시 국가·공공기관 대상 보안적합성검증 생략 가능

□ 클라우드 보안서비스 도입기준 변경공지 원문 - 국가정보원

1. 각급기관의 원활한 클라우드 서비스 도입을 위해 클라우드 보안서비스 도입기준을 아래와 같이 한시적으로 변경할 계획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 - * 클라우드 보안서비스(SECaaS, Security as a Service) : SaaS의 한 종류로 클라우드 환경에서 정보보호제품의 보안기능을 제공하는 서비스
- 가. 변경대상 : 웹방화벽서비스, 스팸메일차단서비스 등 사전인증(CC인증 또는 보안기능 확인서)이 필요한 정보보호제품을 포함하고 있는 클라우드 보안서비스
- 나. 시행기간 : 2021.6.14 ~ 2024.12.31
- 다. 변경내용 : KISA 클라우드 보안인증이 유효한 민간 클라우드 보안서비스는 CC인증 또는 보안기능확인서가 없어도 각급기관에서 도입 가능
 - * 각급기관 자체 구축 클라우드는 해당되지 않음

※ 출처 : https://www.nis.go.kr:4016/AF/1_7_2_3/view.do?seq=83¤tPage=1&selectBox=&searchKeyword=&fromDate=&toDate=